



부 산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26고정374 저작권법위반
피 고 인 A
검 사 김민정(기소), 송민욱(공판)
판 결 선 고 2026. 7. 8.

주 문

피고인을 벌금 2,0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이 유

범 죄 사 실

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, C호에 소재지를 둔 'D', 경북 예천군 E, 1층에 소재지를 둔 'F'이라는 각 상호로 온라인 위탁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.

저작재산권,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. 7. 7.경 불상의 장소에서 로봇청소기를 판매하기



위하여 인터넷 쇼핑몰 G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페이지와 인터넷 H 사이트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페이지의 각 제품 상세정보 란에 저작권자인 I 주식회사가 제작한 로봇청소기의 기능, 특징 및 사용 방법 등의 사진 등 저작물을 I 주식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각 게시하여 제품 판매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 I 주식회사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1. 증거자료, 저작권등록증-pdf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, 벌금형 선택

1. 노역장유치

형법 제70조 제1항, 제69조 제2항

1. 가납명령

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양형의 이유

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,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,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, 게시 시간이 짧고 그로 인한 수익을 얻은 바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, 성행, 지능과 환경, 범행의 동기, 수단과 결과,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08-21

판사 이호연 _____